

# GS 02-00-00 이사회 운영 규정

제정 2000-01-28

제19차 개정 2024-02-27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한화엔진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적용 범위)

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제3조 (권한)

-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결정한다.
-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
## 제2장 구성

### 제4조 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### 제5조 (의장)

-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.
-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인 회장, 부회장, 사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되, 회장, 부회장, 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집행임원 관리 규정상 Grade 구분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제5조의2 (대표이사의 직무대행)

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인 회장, 부회장, 사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, 회장, 부회장, 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임원 관리 규정상 Grade 구분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3장 회의

### 제6조 (소집권자)

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. 단, 위 소집권자의 유고 시에는 제5조 2항에 따른다.

### 제7조 (소집 절차)

- ① 의장은 회의일 직전일까지 서면, 구두, 전화, Fax, 이메일 및 기타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### 제8조 (결의 방법)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의 산정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

### 제9조 (부의 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1.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
  2. 재무에 관한 사항
    - 가.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
    - 나.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
    - 다.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관한 사항
    - 라. 관계회사 및 자기주식의 처분
  3.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
    - 가. 지점의 설치, 이전, 폐지 (법률상 독립된 기능을 가진 영업소에 한함)
    - 나. 고문 및 자문관리규정의 제·개정
    - 다. 이사회 운영규정의 제·개정
    - 라.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, 폐지
    - 마.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의 제·개정
    - 바.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
- 사. 집행임원인사관리규정 및 집행임원 아닌 이사, 감사의 처우에 관한 규정의 제·개정
  - 아. 사장 이상의 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.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
  - 자.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·개정
  - 차.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
  - 카. 회사가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기타 회사의 기부금 출연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 - 타.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4.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-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경영상 주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  - 가. 매기의 경영계획
    - 나. 중장기 사업계획
    - 다. 연간 예산 편성
  2. 기타 법령에서 정한 보고 사항

### 제10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두고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각종의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이사회 내에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# 제11조 (위임)

이사회는 법령, 정관 및 본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.

### 제12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

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- ② 상기 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### **제13조 (의사록)**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 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# **제14조 (간사)**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따로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회의의 소집 통고, 의사록의 작성 등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.